

의안 번호	2066	<b>[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]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4. 7.(금) 문희성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4. 7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4. 27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문희성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,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(안 제5조)
- 전담조직(안 제6조)
-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등(안 제8조)
- 데이터 수집분야 및 데이터의 수집·관리(안 제9조 ~ 제10조)
-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(안 제11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조례안은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,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·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,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,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